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4185

발의연월일: 2021. 12. 30.

발 의 자: 민형배·김철민·박상혁

박홍근 • 배진교 • 윤준병

임종성 · 장경태 · 정필모

주철현 · 황운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마약성 진통제는 암환자나 만성 통증환자에게 사용합니다. 일부 의사는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환자인지 구체적 확인 없이 아프다는 말만으로도 쉽게 처방해줍니다. 이를 악용해 마약 중독자가 쉽게 처방해 주는 의사를 수소문해 찾아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약성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사람이지난해 5만 7,550명으로 재작년에 비해 54%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약류 처방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마약성 진통제 처방 규정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류 처방 시 처방전 외 진단서 등 기록을 같이 발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환자의 동의를 얻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전에 받았던 마약류 진단서 등을 확인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마약류소매업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처방한 처방전과 진 단서 등 기록을 확인한 후에 마약류를 판매토록 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8조, 제3 0조 및 제69조).

법률 제 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마약류소매업자는 제30조에 따라 발급한 처방전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하고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다.

제30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할 때 마약류처방 관련 진단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함께 발급하여야하다.
-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의 동의를 얻어 제11조의3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진단서 등기록을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후에 처방전을 발급하여야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등 기록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1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의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마약류소매업자
- 6의3.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처방 관련 기록을 발급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 6의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생	제28조(마약류의 소매) ①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② 마약류소매업자는 제30조에
	따라 발급한 처방전과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하고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
	성의약품을 판매한다.
<u>②</u> · <u>③</u> (생 략)	$\underline{3} \cdot \underline{4}$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생	제30조(마약류 투약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②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제1
	항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할 때
	마약류 처방 관련 진단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함께 발급하여야 한다.
<u><신 설></u>	③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환자
	의 동의를 얻어 제11조의3의
	<u>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다</u>
	른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
	한 진단서 등 기록을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후에 처
	<u>방전을 발급하여야 한다.</u>

② (생략) <신 설>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69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u><신</u> 설>

7. ~ 10. (생 략)

② (생략)

-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 ⑤ 제2항에 따른 진단서 등 기 록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 6. (현행과 같음)
- 6의2.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마약류소매업자
- 6의3.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처방 관련 기록을 발 급하지 아니한 마약류취급의 료업자
- 6의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확 인하지 아니하고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마약류취급 의료업자
- 7. ~ 10.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